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46489
등록일자	2015.12.22.
결재일자	2015.12.2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생활보장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정역	김인배	김화전	유용렬	황지영	12/23 최창식
협조	주무관 이수정 의회법제팀장 이창하 기획예산과장 권순우				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 개정 계획



복지환경국
사회복지과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 개정 계획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및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서별 조례를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함.

I 관련 근거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

II 개정 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(시행 2015.7.1.)으로 인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통합급여)가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, 교육급여수급자로 개별급여로 보장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대상자 명칭 구분 필요

III 개정 계획

- 일괄개정 대상 조례 현황

연번	조례명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	재무과
2	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	청소행정과
3	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	사회복지과

□ 정비 내용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(급여의 종류)의 개별급여 대상자 보장 기준이 세분화되어 대상자 명칭 변경·구분
- 수급자 범위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모두 포괄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개정 불필요

□ 정비 방법

- 입법형식(조례)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괄개정 추진
- 입법형식 별 정비안 : 【붙임 2】

IV 추진 일정

-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15.12월 중
※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5일로 단축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 제3호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: 2016. 1월 중
- 조례개정안 구의회 상정 : 2016년 1월~2월
- 조례개정안 공포·시행 : 2016년 3월

붙 임 : 1.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 내용.
2. 일괄개정 조례안 1부. 끝.

붙임 1

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 내용

- ① 생계급여 (기존 수급자 가구)
 - 기준중위소득 28% 이하 가구
- ② 의료급여 (기존 수급자 가구)
 -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- ③ 주거급여 (기존 차상위 가구) (국토교통부)
 - 기준중위소득 43% 이하 가구
- ④ 교육급여 (기존 차상위 가구) (교육부)
 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)

기존 제도	맞춤형복지급여				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<small>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</small>	생계급여수급자 <small>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</small>	의료급여수급자 <small>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</small>	주거급여수급자 <small>*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</small>	교육급여수급자 <small>*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</small>	
선정기준	선정기준	선정기준	선정기준	선정기준	선정기준
급여종류	급여종류	급여종류	급여종류	급여종류	급여종류

최저생계비 100% 이하	⇒	중위소득 28% 이하	중위소득 40% 이하	중위소득 43% 이하	중위소득 50% 이하	
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	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	교육급여 자활급여	교육급여 자활급여